

제3차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서면보고일자 : 2020.9.24.(목)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서면보고로 같음함.

※근거

1. 서울시 복지정책과-1407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다중이용시설, 집단 행사 등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등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위원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가. 심의사항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같음하고, 이외의 심의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심의
* 전자적 방법의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시급성은 운영위원회 개최계획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향후 사유 확인 등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나. 보고사항

- 법정처리기한 등 보고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보고로 같음하고, 이외의 보고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 이후에 대면 보고
- ※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에 의한 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 유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보고가 원칙)

I. 보고사항

1. 7월~9월 진행사업보고(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2. 10월~12월 예정사업보고(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3.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보고

■ 복지관 세입·세출 총괄표

구 분	세 입			구 분	세 출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2020년 예산(A)	2020년 1차 추경예산(B)			2020년 예산(A)	2020년 1차 추경예산(B)	
총 계	1,771,676,029	1,696,636,242	▽75,039,787	총 계	1,771,676,029	1,696,636,242	▽75,039,787
사업수입	87,504,000	34,397,200	▽53,106,800	사무비	1,065,775,910	1,057,089,100	▽8,686,810
보조금 수입	1,405,823,740	1,428,365,940	22,542,200	재산 조성비	55,060,697	56,350,850	1,290,153
후원금 수입	104,000,000	58,500,000	▽45,500,000	실비 사업경비	58,627,730	32,711,480	▽25,916,250
전입금	50,000,000	50,000,000	-	무료복지 사업경비	566,871,800	530,518,863	▽36,352,937
이월금	83,835,289	91,543,102	7,707,813	과년도 지출	-	-	-
잡수입	40,513,000	33,830,000	▽6,683,000	잡지출	1,000,000	1,000,000	-
				예비비 (반환금 포함)	24,339,892	18,965,949	▽5,373,943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세입·세출 총괄표

구 분	세 입			구 분	세 출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2020년 예산(A)	2020년 1차 추경예산(B)			2020년 예산(A)	2020년 1차 추경예산(B)	
총 계	236,046,000	222,714,917	▽13,331,083	총 계	236,046,000	222,714,917	▽13,331,083
사업수입	31,800,000	22,320,000	▽9,480,000	사무비	178,717,960	187,488,080	8,770,120
보조금 수입	188,341,000	183,528,370	▽4,812,630	재산조성비	5,900,000	3,050,000	▽2,850,000
후원금 수입	3,450,000	3,450,000	-	사업비	50,270,000	29,915,000	▽20,355,000
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잡지출	150,000	150,000	-
이월금	10,375,000	12,116,547	1,741,547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포함)	1,008,040	2,111,837	1,103,797
잡수입	80,000	300,000	220,000				

II. 기타사항

1. 보조금 탄력적 사용(2020년 한시적 허용)에 대한 보고

1. 보조금 탄력적 사용 관련 추진 경과 보고

□ 「보조금 탄력적 사용」 관련 논의(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운영 변경 계획 2020.4.3.)

- 보조금의 탄력적 사용 허용으로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
- 경상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개방사업비를 시설여건에 따라 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시 까지 한시적 허용(보조금 기본인력 외 인건비 포함)
- ※ 인건비의 운영비 전용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에 한함
- ※ 시설개방사업 : 2월 복지관 휴관 시 부터 사업비 미집행(11,000천원~13,000천원)

□ 「보조금 탄력적 사용」 관련 추진경과 보고

① 보조금 탄력적 사용 용어 수정

- 7월 31일 (서울시→협회) 보조금 탄력적 사용에 대한 문의
구로구→서울시 : 목간 전용 허용이 아닌 관간 전용 허용여부
- 8월 10일 (협회→서울시) : 보조금 탄력적 사용에 대한 해설 정리

- 보조금 탄력적 사용 허용은 복지관 재정 및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함
- 그 방안으로
- 2020년 3분기 경상 보조금 先지급
- 경상보조금(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보조금, 시설개방사업비, 기능특화사업비) 재원 사용의 한시적 허용
- : 보조금 세입 재원(자금 원천)으로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시적 허용을 뜻함. 이는 세입·세출 예산 전용이 아닌 자금원천(상대계정) 사용이 허용된다는 의미임.

보조금 구분	보조금 재원별 집행 원칙	2020년 한시적 허용
인건비 보조금	기본인력 19명(상근정규직원) 기본급 여로만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인력 외 인력(정규직, 계약직 포함) 인건비 집행 가능 - 코로나19 시설방역, 안전조치를 위한 필수경비 집행 가능
운영비 보조금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 기본인력(19명) 인건비 부족분 집행 가능	
시설개방사업비	평일 야간, 주말 공간개방 사업비	
기능특화사업비	기능특화사업비	

